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17

2015. 8. 30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옥외영업 수요를 고려한 제도 합리화 방안

임유경 부연구위원, 오성훈 연구위원, 임강률 연구원

| 요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며, 접근성이 높은 가로변에 상업건축물이 밀집하면서 일부 가로는 지구·도시 차원에서 매력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함
- 주거 건축물과 달리 상업가로변 건축물은 영업공간을 확대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며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 특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조경, 공개 공지, 보도 또는 도로 일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함
- 상업 건축물 계획 시 요구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정책제안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옥외영업행위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조성되는 공지에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옥외영업행위를 허용할 필요
 - 건축물 전면공간을 영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도로법」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를 개정할 필요
 - 관광특구 외에도 허가권자가 옥외영업을 허용한 장소에서는 건축물 전면공간을 식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위생법」시행규칙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규칙 제정 필요
 - 점용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점용허가 대상 가로의 조건, 허가 대상 시설의 위치, 안전 기준, 허가 공간의 관리, 이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포함한 규칙을 제정할 필요

1 서론

■ 일반주거지역 내 용도 혼재, 다양한 위계의 상업가로 형성

- 다양한 용도의 입지가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용도가 혼재되고 일부 지역은 상업용도 건축물이 밀집하여 입지
 - 지하철역 역세권, 인근 대규모 시설 등의 외부적 요인 또는 주거지역을 서비스하는 균린생활시설 입지 등의 내부적 요인에 따라 상업화됨
- 그중 일부는 도시 또는 지구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매력적인 상업지역이 됨
 -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홍대앞 카페거리, 이태원 경리단길 등은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지만 상업거리가 형성되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함
 - 주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도 블록 내부 집산가로에 균린생활 시설이 밀집하면서 시장가로 또는 생활가로가 형성됨

■ 건축물 용도별로 고유의 계획 특성을 보임

- 상업용도 건축물은 매매, 식음, 전시, 광고를 위한 공간, 특히 고객과 만나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유의 계획적 특성이 있음
 - 상업용도 건축물의 전면공간은 소비자에게 시각적·공간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으로 상업 행위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임
- 주거지역 내 상업건축물은 소로 또는 집산가로변의 소규모 필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선도로변 상업지역과는 다른, 고유의 계획적 특성을 보임

■ 용도별 건축계획 및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한 제도 변화 필요

-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임에도 상업기능이 정착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건축물 계획 시 요구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상업가로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현행 제도와의 상충 문제를 개선하고 주거와 상업의 조화로운 공존 방식을 모색할 필요

2 주거지역 내 상업가로변 건축물의 계획 특성

■ 조사 개요

-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상업화 요인을 문화적 성격, 업무지역 배후, 대학가 주변, 시장 네 가지로 구분하고 요인별 대표지역을 선정하여 상업가로변 건축물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특성을 분석함

상업화 요인별 조사 대상 지역과 대표 가로

상업화 요인	대상지	가로명	폭 (m)	연장 (m)	가로 주 용도	용도 지역	가구 구조(열)	향
문화	마포구 서교동, 합정동	서교합정(1) 잔다리로3안길	5	275	음식점 주거	제2종일반주거(7층)	2	-
		서교합정(2) 양화로6길	13	265	카페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3~4	동서
업무 지역 배후	강남구 논현동	논현(3) 강남대로114길	6	152	음식점	제2종일반주거	2~3	동서
		논현(4) 강남대로112길	8	226	음식점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2~3	동서
대학가 주변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	성신여대(1) 보문로34길	15	252	패션 카페	제2종일반주거(7층)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	2~4	동서
		성신여대(2) 동소문로22길	8	156	음식점	제2종일반주거(7층)	3~4	남북
시장	마포구 망원동 [망원시장, 망원월드컵시장]	망원(1) 망원로7길	8	146	식재료	제2종일반주거(7층)	1~3	남북

■ 빈번한 용도 변경 및 설계 변경

- 건축물대장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상업가로에서는 주택 · 업무 · 주차장에서 균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설계 변경을 수반함
 - (용도 변경) 주택 · 업무 · 주차장에서 균린생활시설로 변화하는 경우 외에 균린생활시설 범주 내에서 세부 용도 변경 역시 빈번하게 일어남
 - (설계 변경) 용도 변경은 설계 변경을 수반함. 신사동 압구정로12길(가로수길)은 전체 건축물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설계 변경되었으며, 단독주택지가 상업 용도로 변화하고 있는 서교 · 합정동의 잔다리로3안길에서도 건축물의 32%가 설계 변경되었음

■ 저층부 영업면적 최대화 : 가로 접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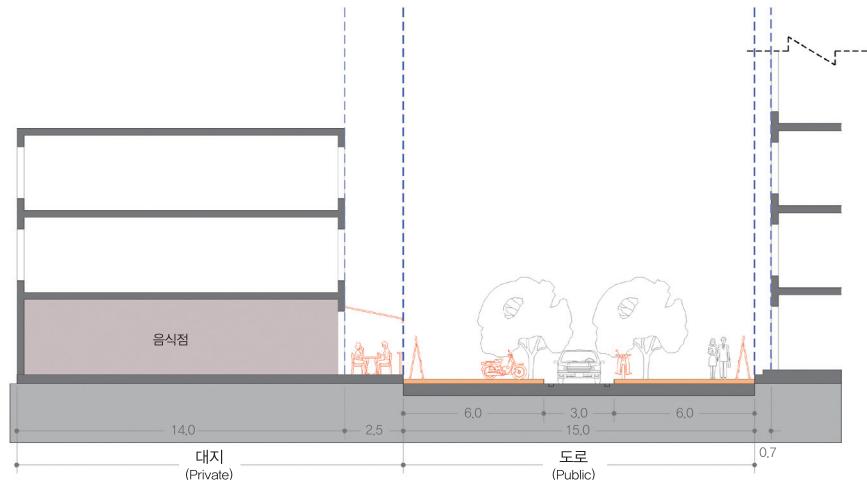
- 상업가로변 점포에서는 홍보, 판매, 식음, 진입로, 주차 목적으로 가로에 면한 저층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대다수 건물에 어닝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영역인 보도에도 입간판과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음
 - 대지와 보도 사이의 전면공간에 데크를 설치하여 야외 영업을 하며, 측면공간에도 영업공간을 증축한 사례가 다수 있음
-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도 전면공간 점용은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차가 통행하는 도로임에도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거나, 도로 위 주차공간을 점유하여 옥외 영업공간으로 활용



상업가로 저층부 공간의 상업적 점용 현황

■ 공적 · 사적 공간의 통합적 이용

-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은 소유 주체에 따라 공공공간과 사적공간으로 구분되지만, 이용자들은 공간을 통합적으로 이용함
 - 점포주는 공공영역인 보도와 도로까지 영업공간을 확장하고, 이용자들은 공공 · 사적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공간을 통합적으로 이용함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통합적 이용 현황(동선동—성신여대)

■ 가로특성 · 필지구조 · 주요 업종에 따른 차이

- 전면공간 접용 양상은 가로 특성과 필지구조,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단독주택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화하는 지역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에 수평적 증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가로에 접하는 건축물은 입면이 가로를 향해 개방적이며, 보도나 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임
 -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시장가로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대 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남

3 상업가로 전면공간 관련 법제도 현황과 제도 개선 수요

■ 법제도 현황

- (공간 소유 주체 · 용도에 따라 다양한 법률 적용) 상업가로를 형성하는 건축물 저층부 용도 대부분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에 해당하여 건축행위를 규정하는 법령 외에 부설주차장 설치, 다중이용업 안전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이 적용됨
 - 공간영역은 대지 안의 공지 · 조경, 공개 공지, 건축선 후퇴공간으로 구분됨. 사유영역은 대부분 「건축법」, 공공영역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계획 · 관리 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계획 · 운영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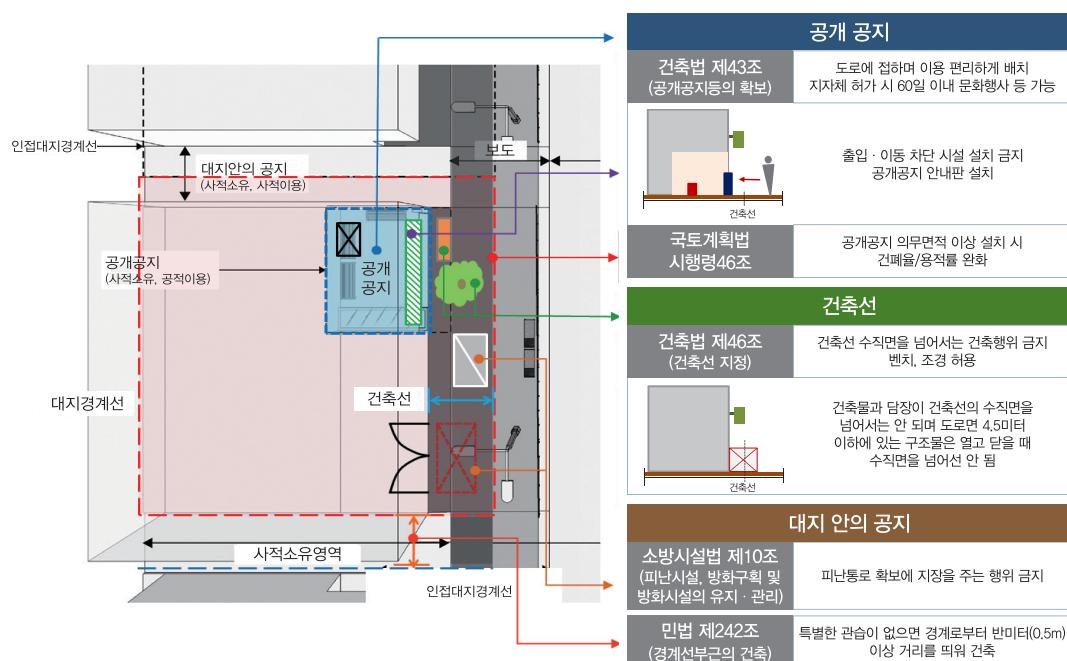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에 적용되는 법령 현황

구분	관련 규정	세부 내용
건축물 저층부 (사유공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지역 · 지구에서 건축용도제한 · 건폐율 · 용적률 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건축물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지 안의 공지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특별건축구역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건축기준 특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시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이용업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주차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 및 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 전면공간 - 보도 (공공공간)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영업을 위한 비상대치로, 출입구 계획의 허가 업종별 시설 기준 및 신고 · 등록
	「도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의 설치 및 관리(「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안전관리 등 보도 위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점용허가 관련)
	「주차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에 관한 계획(주차장 설치기준) 노상주차장의 구조 · 설비기준 노상주차장의 설치 · 전용구획의 설치 · 운영 조례(거주자 우선)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기준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관련 법률 없음)
건축물 전면공간 - 도로 (공공공간)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및 대상시설
	「도로교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의 통행
건축물 전면공간 - 도로 (공공공간)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결정기준 · 구조 · 설치기준)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보도의 결정기준,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 (법령 적용에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고 상업적 점유 제도가 미흡) 대지 안의 공지 · 조경, 공개 공지, 건축선 후퇴공간 관련 규정은 법률에서 정해진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확보된 공지 · 공간에 대한 활용 · 설치 · 유지 · 관리 기준이 미흡함
 - 대지 안의 공지는 피난통로 확보, 대지의 조경은 녹지 면적 확보, 공개 공지는 휴게 공간 확보라는 별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되므로 공간 활용 시 법률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함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관련 행위제한 규정

구 분	일반규제 완화내용	시설 등 설치제한 기준
관련법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항	「건축법」 영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 공지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제한에 대한 사항 완화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 금지 - 이용편의를 위한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 설치
관련법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해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 용적률은 후퇴한 공간에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 설치될 경우 금지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도록 규정
관련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대지 안의 공지	- 제1 · 2종 균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인 상업 용도 건축물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용도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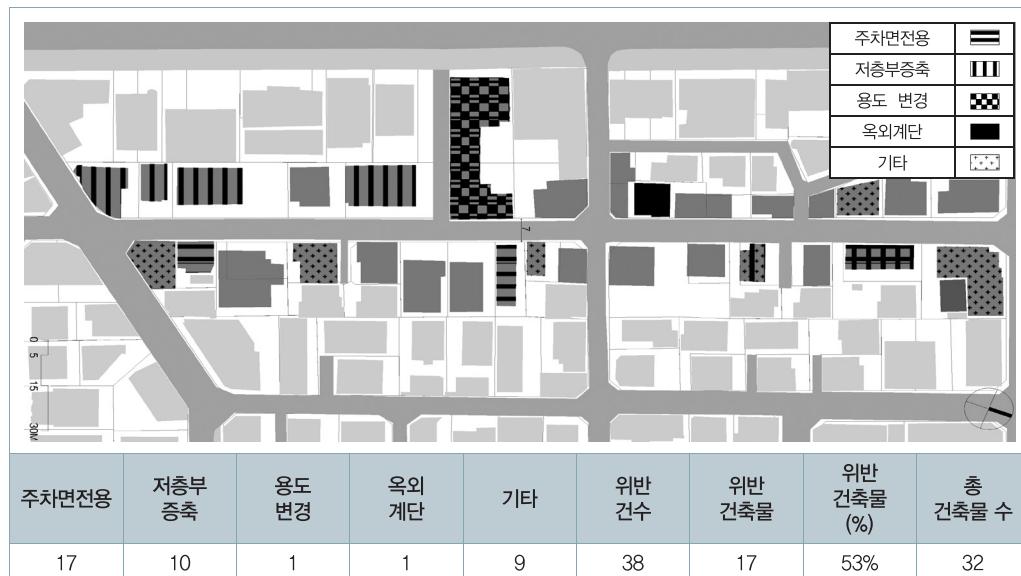
공개 공지, 건축선 후퇴공간, 대지 안의 공지의 행위 제한 규정

■ 기존 법령 위반 현황

- (높은 위반 비율) 조사 대상인 상업가로변 건축물 대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축물의 33.95%가 위반 건축물로 단속된 전례가 있었으며, 일부 가로에서는 위반 건축물 비율이 50%를 넘어섬

- 위반 사항은 주로 주차공간의 무단 용도 변경, 대지 안의 공지 또는 조경 공간에 무단 증축, 불법 용도 변경, 옥외계단 설치임
- (건축물 저층부 영업공간 및 진입로 확보 목적) 상업시설의 영업공간 확보와 관련된 건수가 155건으로, 전체 위반 228건의 68.0%를 차지함
 - 주차장, 대지 안의 공지뿐 아니라, 계단·출입구와 같이 이동을 위한 공간도 영업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또한 영업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불법 증축이 다수 나타남
- (공간이용 수요가 지속되면서 위반행위 반복) 공간이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령 위반 연혁 조사 결과, 동일 건축물에서 주차공간전용이나 저층부 무단 증축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서울시 강남구 00로 법령 위반 현황



■ 점포주 · 이용자 ·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대상 지역 및 가로

상업화 요인	지역	가로	설문 대상 수 (설문 방법)
문화	마포구 서교동, 합정동	잔다리로3안길, 양화로6,12길, 독막로9길	
업무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2길, 강남대로112,114길	※ 지역별 이용자 50인 점포주 20인(1:1 면담) 공무원 6인(온라인 조사)
	서초구 방배동	방배중앙로	
대학가	성북구 동선동	보문로34길, 동소문로22길	
시장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로12길	

- (전면공간 활용 선호) 점포주는 영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는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식음·매매 행위를 즐기기 위해 전면공간 활용을 선호
 - 상업가로 이용자 중 상점 운영 시 전면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4%에 이르며, 서교·합정동에서는 응답자의 92.0%, 동선동(성신여대) 82.0%, 방배동 70.0% 순으로 나타남
 - 응답한 점포의 46.0%는 외부 전면공간을 활용하여 영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음식점과 카페가 다수 분포하는 서교·합정동의 경우 응답자의 80.0%가 전면공간을 영업공간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함
-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인식) 전면공간 활용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54.0%가 이를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점포주의 66.0%, 공무원의 73.3%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점포주들은 영업허가 구역 지정(77.3%), 영업허가 신청 후 허가(84.8%), 이웃과 협정 체결 후 영업 허가(77.3%) 제도 필요성에 대해 높은 비율로 그 필요성을 인정함
 - 공무원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영업행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81.8%), 도로(50.0%) 또는 보도(40.0%) 일부를 점유한 영업행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음
- (가로에 따른 수요와 인식 차이) 전면외부 영업공간에 대한 선호, 불편 사항, 제도 개선 수요의 정도는 가로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제도 마련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

■ 사회적 논의의 흐름

- (옥외영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기대) 신도시와 신시가지, 구도심의 상권이 침체한 지역이나 관광특구, 주거지역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옥외영업은 지역의 작은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 옥외 영업장 집합소가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은 곳곳에 수두룩하다. 현실이 이런데도 행정은 불법 포장마차를 떠나 시절의 법을 고집하고 있다. '실외=불법'이라는 기준을 여전히 부동켜안고 있다. (...) 생활 속 규제-손톱 및 가시-를 개혁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옥외영업의 규제개혁이야말로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

- 경인일보, 2014.09.29, “음식점 옥외영업, 이미 생활 속 문화다.”

- (불법 옥외영업에 대한 민원 및 단속의 어려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반면, 옥외영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됨
 - 영업용 테이블과 의자가 보도 및 도로까지 점용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며 보행자 및 주변 상인과 거주자에게 소음 공해, 음식물 냄새, 간접흡연 등의 불편을 끼친다고 지적함

최근 대전지역 구청 위생과 직원들은 무더위 기승과 함께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불법 옥외영업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 공해에 시달린다는 민원과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동종 업계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단속을 해도 일부 업주들의 경우 '왜 우리 집만 하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단속이 말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시민은 "매일같이 벌어지는 음주자들의 소음으로 인해 가뜩이나 무더운데 더 짜증이 난다"며 "불법 행위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 충청투데이, 2014.07.22, “민원폭주 옥외영업…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옥외영업 관련 제도 개선 요구) 서울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근 상인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상권 활성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공간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구 차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의 활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구체적인 3가지 과제로 지구차원의 이용계획 수립, 민간의 활용기준 마련, 공공공간 이용에 대한 종합정책 추진을 꼽았다. 민간이 공공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기본방향과 대상 거리, 이용시간대, 이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점포주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맡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2012.07.28, “시정연, 노천카페 설치기준 제도화해야”

4 제도 개선 기본방향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공간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대지 안의 공지, 공개 공지, 조경 공간 등 대지 내에 확보된 공지뿐 아니라 보도와 도로 일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상업 활동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에 대한 다양한 공간이용 수요의 조화로운 공존 방식을 모색할 필요
- 상업적 점용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공공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용 부분의 배치 · 규모 · 요소 · 유지 ·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

■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절차 마련

- 상업가로변 전면공간의 이용 수요는 도로 폭과 보도 유무, 상업시설 주요 용도 등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이용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여건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

■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조성–활용–유지 · 관리에는 점포주, 이용자, 공무원,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으므로 구역 지정과 제도 적용에 있어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
 - 협정, 공청회 등 공적 합의 절차를 통해 이용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기준을 수립 · 적용해야 할 필요

5 정책 제언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옥외영업행위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조성되는 공지에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36조에 의해 허가된 옥외영업행위를 허용할 필요
- 일부 상업가로에서 건축물 전면공간을 영업공간으로 점용하는 것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도로법」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및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를 개정할 필요
- 관광특구에 한정되어 허용하고 있는 옥외영업 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허가권자가 옥외영업을 허용한 지정 장소에서는 도로 · 보도의 점용에 관한 관할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건축물 외부 전면공간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 특례 범위 확대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규칙' 제정 필요

- 점용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점용허가 대상 가로의 조건, 허가 대상 시설의 위치, 안전 기준, 허가 공간의 관리, 이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포함한 규칙을 제정할 필요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규칙 목차(안)

제1조(목적)

제2조(타 기관 등의 승인 절차)

제3조(허가 대상 가로 기준)

제4조(허가의 절차 및 제출 서류)

제5조(허가 대상 시설의 위치 및 안전 기준)

제6조(허가 공간의 관리)

제7조(허가에 따른 이용료 징수)

제8조(허가의 취소)

제9조(원상회복)

임유경 부연구위원 (044-417-9615, yklim@auri.re.kr)

오성훈 연구위원 (044-417-9650, oshud@auri.re.kr)

임강륜 연구원 (044-417-9689, krlim@auri.re.kr)

